

평창군 출향군민 교류·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

(이창열 의원)

의안 번호	136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3년 6월 5일

발 의 자: 이창열 의원

찬 성 자: 김성기, 이은미, 박춘희 의원

1. 제안이유

평창군 출향군민 및 출향단체와의 유대강화와 협력체계 구축을 도모하고, 관련 교류·협력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출향군민의 애향심 및 자긍심을 높여 평창군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목적 및 용어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
나. 군수의 책무 규정(안 제3조)

다. 교류·협력 사업에 대한 명시(안 제4조)

라. 시설 이용료 등의 감면에 대한 혜택 규정(안 제5조)

마. 출향군민 및 출향단체 관리 규정(안 제6조)

바. 군정발전 공로에 대한 포상 규정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, 「주민등록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

다. 입법예고 : 2023. 5. 8. ~ 2023. 5. 28.(20일간), 의견 없음

라. 집행기관의견수렴 : 2023. 4. 21.~ 2023. 5. 3., 아래표 참조

조례안	의견(행정과)	의회 의견-부분수용
<p>제4조(교류·협력 사업) 군수는 출향군민과 출향단체와의 교류·협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향토지 보급 등 군정 시책 홍보 2. 군에서 개최하는 주요 축제, 행사, 대회 등의 참여 및 홍보 3. 평창군에서 생산되는 농·특산물의 판매 및 홍보 4. 그 밖의 군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	<p>제4조 및 제7조에 대한 의견으로, 「공직선거법」 제112조제2항제4호나목에서는 대상·방법·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어, 문구상 “예산의 범위에서”를 추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</p>	<p>○ 안 제4조 관련, 협력사업 추진 시 예산 소요가 반드시 예상되고, 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해당 문구를 추가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함</p> <p>○ 안 제7조 관련, 「공직선거법」 제112조제2항제4호나목에서 규정한 ‘범위(일정하게 한정된 영역)’를 예산에 관련된 것이라 특정할 수 없음</p> <p>「공직선거법」 제112조제2항제4호가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표창·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고 명시한 바,</p>
<p>제7조(포상) 군수는 군정발전과 교류·협력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큰 출향군민 및 출향단체에 표창장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으며,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사항은 「평창군 포상조례」를 따른다.</p>		<p>포상금 및 부상 등의 예산 수반이 필요 없고 상장·상패 제작의 실비만 소요되는 상황에서 해당 문구 추가는 불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, 조례안을 유지함</p>

평창군 출향군민 교류·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평창군 출향군민 및 출향단체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평창군의 발전을 도모하고, 군민의 역량 집결과 교류·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출향군민”이란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(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) 또는 「주민등록법」 제6조에 따른 주민등록을 평창군에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평창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을 제외한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(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)을 말한다.
2. “출향단체”란 출향군민을 회원으로 하여 평창군 이외의 지역에서 평창군 발전 등을 위하여 구성된 읍·면 단위 이상의 지역·직능별 모임을 말한다.

제3조(책무)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출향군민 및 출향단체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교류·협력 사업) 군수는 출향군민과 출향단체와의 교류·협력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향토지 보급 등 군정시책 홍보
2. 군에서 개최하는 주요 축제, 행사, 대회 등의 참여 및 홍보

3. 평창군에서 생산되는 농·특산물의 판매 및 홍보

4. 그 밖의 군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5조(시설 이용료 등의 감면) 출향군민은 평창군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, 해당 시설의 운영 조례에 따라 이용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.

제6조(관리) 군수는 출향군민과의 원활한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출향단체 및 그 회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변동사항을 점검하여 정리하고, 관련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.

제7조(포상) 군수는 군정발전과 교류·협력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큰 출향군민 및 출향단체에 표창장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으며,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사항은 「평창군 포상조례」를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관련법령]

〈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〉

- 제10조(등록기준지의 결정) ① 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처음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.
- ② 등록기준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.

〈주민등록법〉

제6조(대상자) ①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(이하 “거주지”라 한다)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(이하 “주민”이라 한다)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. 다만,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. <개정 2014. 1. 21.>

1. 거주자: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(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)
 2. 거주불명자: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
 3. 재외국민: 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 「해외이주법」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
 - 가.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
 - 나.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
- ② 제1항의 등록에서 영내(營內)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○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의회 이창열 의원
연락처	(033) 330 -2504